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558
----------	------------

제안연월일 : 2019년 6월 14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개정('19.3.28)되었고, 동 조례인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6조제4호가 제5호로 개정('19.5.16)되어있는바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개정되었고, 계획명이 '정보화기본계획'에서 '스마트 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를 반영함(안 제4조 제2항).
- 안 제6조 중 제4호가 제5호로 개정되었는바 이를 반영함(안 제6조).
- '서울특별시정보접근성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로 띄어쓰기를 함(안 제8조).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정보화 조례」”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정보화기본계획”을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하며,

안 제6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서울특별시정보접근성위원회”를 각각 “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시행계획의 수립)</p> <p>① 생략</p> <p>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u>정보화 기본조례</u>」 제5조의 서울특별시 <u>정보화기본계획</u>과 연계되도록 한다.</p>	<p>제4조(시행계획의 수립)</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u>정보화 기본조례</u>」 제5조의 서울특별시 <u>정보화기본계획</u>과 연계되도록 한다.</p>	<p>제4조(시행계획의 수립)</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u>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u>」 제5조의 서울특별시 <u>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u>과 연계되도록 한다.</p>
<p>제6조(추진사업)</p> <p>1. 4. 생략</p> <p>5. 그 밖의 정보취약계층의 <u>웹접근성</u>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제6조(추진사업)</p> <p>1. 3. 생략</p> <p>4. 그 밖의 정보취약계층의 <u>웹접근성</u>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제6조(추진사업)</p> <p>1. 4. 생략</p> <p>5. 그 밖의 정보취약계층의 <u>정보접근성</u>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제8조(위원회)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u>웹접근성</u> 향상을 위한 주요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u>를 둔다.</p> <p>1.2. (생략)</p> <p>3. 그 밖에 <u>웹접근성</u>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제8조(위원회)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u>정보접근성</u> 향상을 위한 주요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정보접근성위원회</u>를 둔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그 밖에 <u>정보접근성</u>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제8조(위원회)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u>정보접근성</u> 향상을 위한 주요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서울특별시정보접근성위원회</u>를 둔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그 밖에 <u>정보접근성</u>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②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정보화전략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정보접근성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정보접근성 전문가가 포함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정보접근성위원회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정보접근성 전문가가 포함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로 본다.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을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웹접근성”이란 웹사이트”를 “정보접근성”이란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한다.

제3조 중 “웹접근성”을 “정보접근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5호 중 “웹접근성”을 각각 “정보접근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서울특별시 정보화 조례」”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정보화기본계획”을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웹접근성”을 각각 “정보접근성”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웹접근성”을 각각 “정보접근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웹접근성”을 각각 “정보접근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웹접근성”을 “정보접근성”으로, “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웹접근성”을 “정보접근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로,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정보화전략위원회”를 “스마트도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서울특별시정보화전략위원회”를 “정보접근성 전문가가 포함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로, “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로 한다.

제9조 중 “웹접근성”을 각각 “정보접근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웹접근성”을 각각 “정보접근성”으로 한다.

제11조 중 “웹접근성”을 “정보접근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u></p>	<p><u>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u>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u>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u>웹접근성</u>"이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책무) 서울특별시는 정보취약계층의 <u>웹접근성</u>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u>웹접근성</u> 향상을</p>	<p>제1조(목적) ----- <u>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u> ----- ----- -----.</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정보접근성</u>"이란 웹사이트와 <u>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u>----- -----.</p> <p>제3조(책무) ----- - <u>정보접근성</u> ----- ----- -----.</p> <p>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 ----- ----- <u>정보접근성</u> -----</p>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5조의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4. (생략)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웹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웹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 스마트도시 및 기본계획-----.

③ -----
-----.

1. (현행과 같음)

2. ----- 정보접근성 -----

3.~4. (현행과 같음)

5. ----- 정보접근성 -----

제5조(실태조사) ① -----
----- 정보접근성 -----
----- 정보접근성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정보접근성 -----
-----.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2.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3.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 홍보
4. (생략)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를 둔다.

제6조(추진사업) -----
-- 정보접근성 -----
-----.

1. ----- 정보접근성 -----

2. ----- 정보접근성 -----

3. ----- 정보접근성 -----
4. (현행과 같음)
5. ----- 정보접근성 -----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
----- 정보접근성 -----

-----.

② ----- 정보접근성 -----

-----.

제8조(위원회) ① -----
--- 정보접근성 -----

----- 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

1.~2. (생략)

3. 그 밖에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정보화전략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로 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및 웹접근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웹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3. ----- 정보접근성 -----

② ----- 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스마트도시위원회-----
----- 정보접근성 전문가가 포함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서울특별시 정보접근성위원회-----.

제9조(협력체계 구축) -----
----- 정보접근성 -----
----- 정보접근성 -----
-----.

제10조(위탁) ① -----
정보접근성 -----

----- 정보접근성 -----
-----.

②·③ (생략)

제11조(포상)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등을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포상) -----
정보접근성 -----

-----.